

2024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사업 안내서

2024. 01. 22.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목 차

1. 사업개요	1
2. 지원자격	3
3. 신청 및 접수	4
4. 추진절차	6
5. 선정 및 협약체결	7
6. 진도관리	8
7. 결과보고 및 평가	8
8. 사업비 지급, 계상, 관리 및 사용	9
9. 성과활용	9
10. 기타사항	9
붙임 1. 평가 및 가·감점 기준	11
붙임 2. 비목별 계상 및 산정기준	14
붙임 3. 사업신청서 작성 양식	16

1

사업개요

◇ 세부 사업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을 따른다.

- (사업목적) 녹색 혁신기술 보유 기업과 기술 수요기관 간 매칭으로 녹색기술의 개발·보급 촉진 및 기업의 환경경영 지원
 - (공급기업) 현장 실증데이터(Track Record) 확보로 시장판로 확대
 - (수요기관) 녹색 혁신 기술·설비 적용으로 기관의 환경현안 해결
- (지원대상) 녹색 혁신기술을 보유한 공급기업과 관련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수요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수행기관)

구 분	지원자격	기업유형
설비 공급기업	환경기술 권리를 보유하고 실증자료 확보를 희망하는 기업(업력 2년 이상)	중소·중견기업
설비 수요기관	현장 실증장소를 제공하여 환경분야 개선을 희망하는 기관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등

※ 수행기관은 1개의 수요기관과 1개 또는 복수의 공급기업으로 구성될 수 있음

- (지원내용) 수요기관 내 혁신설비를 제작·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 (지원기간) 협약일 ~ 2024.11.30.
- (지원규모) 컨소시엄당 최대 10억원 이내 (17개사 내외 지원 예정)

구 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중소기업	총 사업비의 70% 이하	총 사업비의 30% 이상
중견기업	총 사업비의 50% 이하	총 사업비의 50% 이상

※ 공급기업 규모에 따라 비율 차등 적용

※ 민간부담금은 현금(민간부담금 50% 이상) 및 현물(민간부담금 50% 이하) 구성 가능, 민간부담금 세부 부담내역은 사업 신청 전 공급기업 및 수요기관 간 사전 조율 후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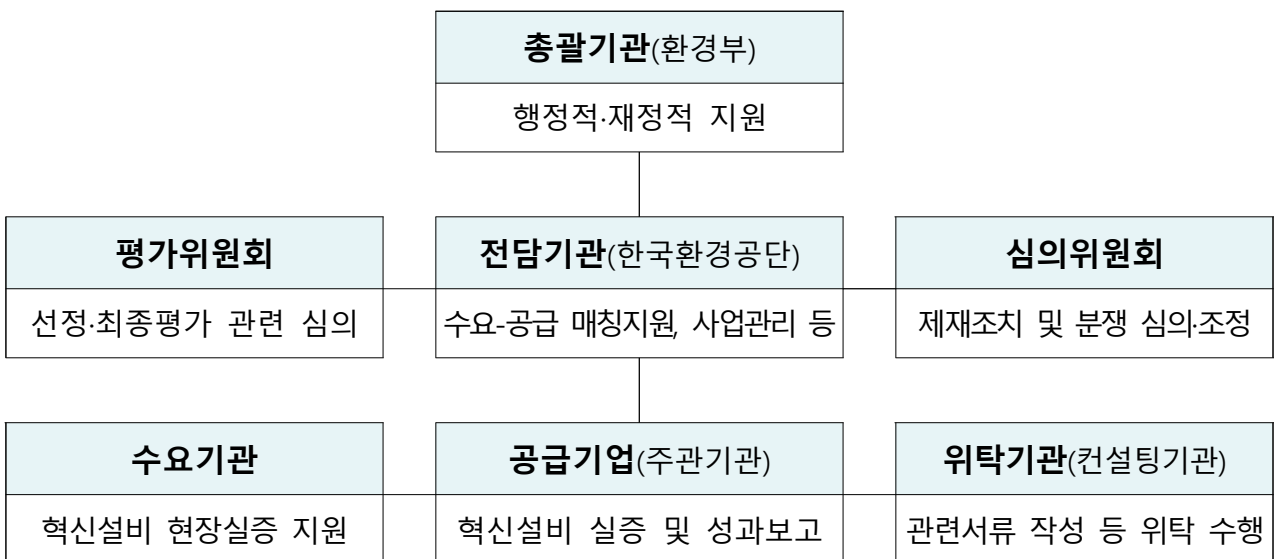
[연물(인건비) 관련 유의사항]

- ◇ 현물의 경우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공급기업 참여인력의 인건비만 계상 가능
- ◇ 민간부담금 중 실제 현물 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금액 전체를 현금으로 환수 예정(참여 연구원별 정산)

- (지원분야) ① 청정대기, ② 기후테크(탄소포집·활용 등), ③ 스마트물, ④ 자원순환(공정부산물 등), ⑤ 환경AI·ICT, ⑥ 바이오가스 등 환경 쏠분야

분 야	세부 분야
청정대기	실내외 공기정화(환기, 에어샤워), 측정·감시(모니터링, 누출 조기 감지), 악취제거(집진, 흡착, 세정, 탈취),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등
기후테크 (탄소포집·활용 등)	CCUS(탄소 포집·저장·이용), 폐열 및 폐에너지 이용·회수, 저탄소 공정/탄소저감 설비 등
스마트물	지능형 물관리(자동측정·모니터링), 물 재이용(하폐수 순환이용), 정수 및 하·폐수 고도처리, 탄소 저발생 수처리(에너지 절감) 등
자원순환 (공정부산물 등)	폐기물 저감(압축, 탈수 등), 재사용(폐수, 폐열·폐가스, 순환골재), 재제조(공정부산물 활용), 재활용·회수(물질재활용, 에너지회수), 가연성 자원화(SRF, 열분해), 유기성자원화(사료퇴비, 바이오가스), 배터리 생산·재활용, 탈플라스틱 등
환경AI·ICT	IoT 모니터링(센서활용 자동측정), Big Data(빅데이터) 분석·관리, AI(인공지능) 제어시스템 구축 등
바이오가스	혐기성 소화, 가스 활용(정제, 발전), 식품폐수처리, 소화 잔재물 재활용 등

○ (추진체계)



2

지원자격

- **(설비 공급기업)** 환경분야 **혁신설비를 공급하는 기업**으로 업력 2년 이상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구성하여야 함
 - 신청과제 관련 **환경기술 권리***를 보유하여야 하고, 설비 공급 기업은 **설비 수요기관이 될 수 없음**
 - ※ ①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이 확보된 기술에 대한 권리(법인 사업자의 경우 개인 명의 특허 신청 불가) ② 녹색인증기술 ③ 환경신기술 中 1개 필수
 - 설비 공급기업은 주관기관으로서 **수행기관을 대표해** 사업을 신청하며 주관기관 내 **수행책임자를 지정하여** 과제를 수행하여야 함
- **(설비 수요기관)** 환경설비 도입을 목적으로 **현장실증을 지원**하는 기업으로 **1개 또는 복수의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음
- 관리지침 제13조(신청자격의 제한)에 따라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기관에 대하여 **본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참여제한 기준]

- 부도 또는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휴·폐업 중인 경우
- 관리지침 제29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 보조금법을 위반하여 수행 배제 기간 중인 위반업체가 동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중인 경우
- 최근 2년 연속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text{자본잠식률(\%)} = \frac{[(\text{자본금} - \text{자기자본}) / \text{자본금}] \times 100}{}$$

-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환경 관련 법령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받은 경우
-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 불이행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1회 이상 고발 또는 3회 이상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인 경우

-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속한 사업장인 경우
-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속한 사업장 및 제13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인 경우
- 제출한 사업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 타 정부지원 사업에 선정된 경우(해당 과제에 한함)
- 사업화(매출발생)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 목적인 경우

3

신청 및 접수

- **(신청대상)** 공급기업과 수요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의 주관기관
 - ※ 주관기관은 공급기업이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접수기간)** '24. 01. 22.(월) ~ '24. 02. 28.(수) 18:00까지
- **(신청방법)**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www.gosims.go.kr)에서 신청
 - ※ 한국환경공단 누리집 공지사항 '2024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공고 참조

[e나라도움시스템 사업신청 절차]

- ① e나라도움 회원가입 후 [주관기관 아이디로 로그인] ⇨ ② [사업수행관리] ⇨
- ③ [신청관리] ⇨ ④ [사업신청관리] ⇨ ⑤ 공모현황 ⇨
- ⑥ 공모명 선택(2024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후 [신청서 작성] 클릭
 - ⇨ e나라도움에 작성 및 첨부서류(사업신청서 등) 파일 첨부 ⇨ [신청서제출] 클릭
 - ※ 주관기관이 신청기관 정보내역 작성 시 "컨소사업자 추가"를 클릭하여 주관기관 외 공급기업 및 수요기관 정보를 필히 등록하여야 함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1식
 - ※ 본사업 신청 관련 제출서류(1~20번) 목록 참조(필수서류 누락 시 미제출 처리 예정)
 - ☞ 1번(사업신청서), 2번(사업계획서)의 경우 별첨의 엑셀양식도 필수서류에 포함
 - ※ 사업계획서 샘플 : <https://www.keco.or.kr/web/lay1/S1T268C1166/contents.do>
 - ※ 사업관련 Q&A : <https://www.keco.or.kr/web/lay1/S1T268C270/contents.do>
-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K-eco연구원 ESG기업지원부,
(TEL) 032-590-4813, 4817 (E-mail) kecomicro@keco.or.kr

< 본사업 신청 관련 제출서류 목록 >

구분	순번	첨부서류		수량 (부)	체크사항		비고
					제출	비제출	
공단 양식 작성 서류	1	수행기관	[별지2] 사업 신청서		1		※ 별첨의 엑셀파일 작성 후 함께 제출
	2	수행기관	사업계획서		1		※ 별첨의 엑셀파일 작성 후 함께 제출
	3	공통	[별첨1] 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원본	1		
	4	공통	[별첨2] 중복지원 금지 약속서	원본	1		
	5	공통	[별첨3] 신청기업 자기진단서	원본	1		
	6	공통	[별첨4] 안전보건 서약서 및 안전보건계획서	원본	1		※ 안전보건계획서 작성 시 신청기업 자체 양식 사용 가능
구비 서류	7	공통	사업자등록증	사본	1		
	8	공통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		
	9	공통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		※ 개인사업자일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원본 제출
	10	공통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원본	1		
	11	공통	최근 2개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사본	1		
	12	공통	가점 현황 증빙자료	사본	1		※ 해당시 제출
	13	공급기업	고용 증빙 자료(4대보험 중 가입자 확인가능 자료)	원본	1		※ 사업비에 인건비 계상시
	14	공급기업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사본	1		
	15	공급기업	신청 기술 관련 증빙자료	사본			※ 특허증, 시험성적서, 성능확인서 등
	16	공급기업	설비의 사양파악 자료	-	1		※ 카탈로그 등
	17	공급기업	설비의 주요구성 및 설계도, 조감도 등	-	1		
	18	수요기관	기존 시설의 주요 구성도	-	1		
	19	수행기관	예상효과 산출근거 데이터 증빙자료	-	1		
	20	수행기관	사업비 사용계획 산출내역에 대한 견적서 등 근거자료	-	1		※ 자산취득비·시설비는 건당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 포함 ※ 일반용역비는 산출내역서 및 과업지시서 포함

4

추진절차

<p>사전 신청 (‘23.11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환경공단 ↔ 설비공급기업, 설비수요기관 ■ (사전 신청) 공급·수요기관 개별 모집(공단 이메일 접수)
<p>공급-수요 매칭지원 (‘23.12월~24.2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환경공단 ↔ 설비공급기업, 설비수요기관 ■ (매칭 데이) 사업설명회 및 기업교류 지원(공급-수요 매칭) <p>< 온라인 매칭지원시스템(https://bizmatch.kr/KECO) 운영 개요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칭 지원을 위한 온라인시스템을 본공고 종료 까지 운영 예정 - 사전신청 기업의 자료(공급-보유기술, 수요-요구설비) 확인 가능
<p>본사업 신청 (‘24.1~2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환경공단 ↔ 수행기관 ■ (본사업 신청) 수행기관(공급+수요기관) 모집(e나라도움 접수)
<p>지원과제 선정 (‘24.3~5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환경공단, 평가위원회 ■ 지원자격 사전검토, 서면평가, 현장확인, 최종선정평가
<p>협약체결 (‘24.6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환경공단 ↔ 수행기관 ■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서류 제출, 선금 지급(정부지원금 70%)
<p>사업수행 (‘24.7~11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기관 ■ 혁신설비 제작·설치 및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집행 시 e나라도움시스템 및 조달청 나라장터(계약) 이용 필수
<p>진도관리 (‘24.7~11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환경공단 ↔ 수행기관 ■ 과제 수행현황 월간보고서 제출(매월) ■ 설치현황 현장확인, 추진진도에 따라 잔금 지급(정부지원금 30%)
<p>보고서 제출 (‘24.12월~‘25.1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기관 ■ 사업결과보고서,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p>최종평가 및 정산 (‘25.1~2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기관 ↔ 한국환경공단, 최종 평가위원회 ■ 사업결과 최종평가, 정산보고서 검토·확정
<p>사후관리 (3년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환경공단 ↔ 주관기관 ■ 사업 효과 보고서 제출(실증 운영자료 추가 제출 필요)

※ 세부내용 및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선정 및 협약체결

< 지원 대상 선정 절차 >

공고·접수	사전검토	서면평가	현장조사	선정평가	협약체결
신청서 접수	자격요건 검토	서류평가 (60점 미만 탈락)	수요기관 현장확인	발표평가 (60점 미만 탈락)	추진계획 보완 및 협약
공단	공단	평가위원회	공단	평가위원회	공단-수행기관

- **(사전검토) 참여제한**(국세 및 지방세 체납 및 유사과제 해당여부, 휴·폐업 기업 등) 등 사전검토를 통한 **부적합기관 탈락 조치** 및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 보완 요청
- **(서면평가)** 평가위원회에서 사업목적 부합성, 사업 적정성 및 기업 역량, 사업예산 합리성,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평가 실시
 - ※ 종합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당해년도 사업 계획 물량의 1.5배수 범위 내의 신청과제에 대하여 선정평가 대상 선정 및 현장 조사 등을 실시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에서 사업목적 부합성, 과제수행체계 및 역량, 사업내용, 기술 혁신성,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평가 실시
 - ※ 선정평가 시 수행책임자 및 수행기관(공급기업, 수요기관) 대표자가 발표 및 질의에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행기관 직원 1인 추가 배석 가능

구분	평가항목	비고
서면평가 (1단계)	■ 사업목적 부합성(부합성, 달성도, 적용기술 혁신성)	40점
	■ 사업 적정성 및 기업역량(목표 적절성, 재무현황)	25점
	■ 사업예산 합리성(예산 적정성, 사업비 편성 타당성)	15점
	■ 기대효과(사업성, 환경.사회적 효과성)	20점
선정평가 (2단계)	■ 사업목적 부합성(사업대상 관련성, 혁신기술 여부 등)	30점
	■ 과제수행체계 및 역량(수행체계 적절성, 경영역량 등)	20점
	■ 사업내용(사업계획서 완성도, 사업비 산정 적정성)	15점
	■ 기술 혁신성(처리성능, 경제성, 유지관리 편의성)	25점
	■ 기대효과(사업성, 환경.사회적 효과성)	10점

※ 서면평가종합점수 = 서면평가점수 + 가감점 [붙임 1 참조]

※ 최종종합평가점수* = (서면평가종합점수 × 0.3) + (선정평가점수 × 0.7)

*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당해 연도 사업비를 고려해 “지원과제”와 “후보과제” 분류

- **(협약체결)** 최종 사업계획서, 원가계산서 등 **협약체결 관련 서류**가 구비 완료된 수행기관에 한하여 **협약 진행**
 - 최종 선정된 수행기관은 조정된 정부지원금 및 사업비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수정 작성하여 전담기관(한국환경공단)에 제출**
 - ※ 최종 선정된 지원기업의 사업비는 협약체결 전(前),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받은 원가계산서를 최종선정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전담기관(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기업에서 부담
 - 사업계획서 수정이 완료된 **주관기관은 협약서를 작성, 지급보증보험증권, 신규개설 통장 사본, 민간부담금 부담 협약서 및 민간부담금 입금 확인증, 정부지원금 지급신청서 등과 함께 제출**
 - ※ 협약 체결 시 협약기간에 가산기간(3개월)을 포함한 정부지원금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보험료 기업 자부담)
 - ※ 제출기한 내 협약체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선정 취소 조치
 - ※ 정부지원금은 민간부담금 중 현금이 선 입금(선금 70%, 잔금 30%) 된 후 지급

6

진도관리

- 전담기관은 수행기관 **진도관리(현장방문)**을 통해 **수행실태 및 사업계속 여부 결정**
 - ※ 진도관리 결과 “계속”인 경우에만 잔금(30%)을 추진 진도에 따라 차등 지급 가능

7

결과보고 및 평가

- **(결과보고)** 협약기간 종료 후 전담기관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목표 달성 실적 등을 사업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
- **(결과평가)** 전담기관은 사업결과보고서가 모두 제출된 후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결과평가 실시
 - 결과평가 결과 평점 60점 이상 “성공”, 60점 미만 “실패”로 분류
 - ※ “실패” 판정된 과제 및 사업결과보고서 미제출 과제는 관리지침에 따라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진행

8

사업비 지급, 계상, 관리 및 사용

- **(지급)** 정부지원금 70%를 선금으로 지급하고, 진도관리를 통해 사업수행의 계속여부가 결정된 수행기관에 한하여 30% 잔액을 추진 진도에 따라 차등 지급
- **(계상·관리·사용)** [붙임2]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사업비 계상 후 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에 대하여 신규 계좌를 개설·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동 계좌와 연결된 보조금시스템을 사용하여 집행
- **(정산)** 검증기관(회계법인)의 검증이 완료된 정산보고서를 협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 ※ 정부지원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인 수행기관은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함
- **(위반사업 등에 대한 제재)** 수행기관이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음

9

성과활용

- **(보조사업실적보고서)** 협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 종료 후 3년간 매년 결산이 완료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 효과보고서 제출

10

기타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생협력 실증프로그램 관리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 신청기업에게 있습니다.

- 수행기관은 사업 수행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해야 하고, 사업종료 후 5년 이내에 성과물의 양도,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35조를 준용하여 적용
- 주관기관은 컨설팅기관을 지정·위탁하여 사업과제 관련 서류의 작성 등 제반 행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음(다만, 컨설팅 비용은 지원과제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최대 30백만원 이내로 총사업비에 계상가능)
- 동 사업의 정부지원금 이외에 주관기관의 컨설팅기관 지정·위탁 및 컨설팅 추진 결과, 도입 기술·설비의 설치·구축 등 안전성·신뢰성, 기대효과 미흡, 민간부담금 등의 사전·사후 피해와 그 보상 등은 정부 및 한국환경공단(전담기관)과 무관하고, 정부 및 한국환경공단(전담기관)은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음
- 설비수요기관과 설비공급기업 간 발생할 수 있는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분쟁, 도입 기술·설비의 설치·사용 등에 있어 수행기관과 계약관계자 및 이해관계자 간의 일체의 분쟁, 도입 기술·설비의 설치·구축·운영 등의 안전성·신뢰성 등 소비자 관련 사전·사후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정부 및 한국환경공단(전담기관)과 무관하고, 정부 및 한국환경공단(전담기관)은 법적인 책임이 없음
- 지원과제 추진에 있어 행정 인·허가사항(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등)으로 인한 설치 불가나 민원사항(소음발생, 조망권 침해 등) 및 기타 사항(사업포기 등) 등 발생 시, 1개월 이내에 해결 불가능할 경우 사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 사업수행 및 사후관리 기간 동안 관리지침에 따라야 하며,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의 요구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불이행에 따른 별도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가. 서면평가 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방법
사업목적 부합성 (40)	사업목적 부합성(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된 과제에의 추진배경 및 도입 필요성이 상생 협력 실증 프로그램 사업 추진 목적과 부합하는지 평가한다. - 동 프로그램으로 이미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타 신청과제에 우선하여 추가 지원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은지 평가한다.
	사업목적 달성도(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에서 설정한 목표가 본 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한 정도를 평가한다.
	사업 적용기술 혁신성(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 기술의 우수성 및 차별성 등 기술 수준을 평가한다. - 적용 기술의 공급기업 자체 개발 여부를 확인하여 사업성과 확대 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사업적정성 및 기업역량 (25)	목표·계획 적절성 및 체계성(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개선 효과 등 사업목표 및 추진계획에 대한 적절성 및 체계성을 평가한다. - 사업계획 제출 시 제시된 과제의 부정수급 방지대책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기업의 재무현황(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신용도, 현금흐름등급 및 재무재표를 검토하여 기업의 재무적 안정성을 평가한다.
사업예산 합리성 (15)	사업예산 적정성(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사업비 중 혁신설비 설치 비용의 비중과 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산출이 타당한지를 평가한다. - 제출받은 최근 5년간의 보조사업 수혜이력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편중 지원 여부를 평가한다.
	사업비편성 타당성(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계상 시 사업관리지침의 준수 여부를 평가한다.
기대효과 (20)	사업성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사업화 목표 및 판로 전망을 평가하여 사업화 기대효과를 평가한다.
	환경·사회적 효과성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추진으로 인한 환경오염물질 저감 및 비용절감 등 환경적·사회적 기대효과를 평가한다.

나. 선정평가 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방법
사업목적 부합성 (30)	사업대상 관련성(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증 설비 설치 시 환경오염물질 및 탄소저감 등 환경개선 효과성을 평가한다. - 설비가 설치되는 장소가 본 협력사업과 기술 실증에 적합한 현장인지 평가한다. - 현장적용 실적 및 기 매출액 등 사업화 추진 현황 등 사업화 진행여부로 동 프로그램(사업)을 통한 현장실증 필요성을 평가한다.
	혁신 기술 여부(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상용화 기술·설비와 차이점 및 우수성을 평가한다. - 사업 전·후 혁신기술이 적용된 설비 효율이 향상 가능성을 평가한다.
과제수행체계 및 역량 (20)	과제수행체계 적절성(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비공급기업 및 설비수요기관의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체계가 적절한지 평가한다.
	과제수행 경영역량(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여 사업내용을 구성하였는지 평가한다. - 재무현황, 생산능력, 기술개발능력 등 인적·물적으로 원활히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평가한다.
사업내용 (15)	사업계획서의 완성도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내용을 반영하여 현장실증을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설정 및 추진방법의 적절성 ·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적용의 적정성 · 사업내용의 구체성, 실효성 · 사업기간 및 추진일정 적정성 등
	사업비 산정 적정성(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입하는 예산 대비 산출효과의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한 여부를 평가한다.
기술 혁신성 (25)	처리성능(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 기술의 처리효율·시간 등 성능의 우수성과 사후 성능·품질의 재현을 위한 완성도를 평가한다.
	경제성(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기술 대비 시설의 설치비용, 유지관리비의 절감 등 경제성을 평가한다.
	유지관리 편의성(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성능 구현을 위한 운전·제어, 작업 요원의 숙련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을 평가한다 - 과제 추진 및 설비의 운영 중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기대효과 (10)	사업성(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사업화 목표 및 추진계획등으로 판로 전망을 평가한다.
	환경·사회적 효과성(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설비의 사업화시 환경·사회적 예상 효과를 평가한다.

다. 가점 기준

순번	항 목	가점	비고
1	(수요기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통합 관리 대상 사업장 - 상기 법령 적용 시기가 지침 제9조에 따른 사업 공고일 기준 4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종 추가 1점 부여	1 (최대 2점)	증빙 제출
2	(공급기업)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및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 기업	1.5	증빙제출
3	(공급기업)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최종평가 결과 성공 수행 과제 (최근 5년이내) / 해당기술에 한함 (사업화 지원 내용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개발촉진” 사업만 해당)	1.5	증빙제출
4	(공급기업)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성공과제’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최근 5년이내) / 해당기술에 한함	1.5	증빙제출
5	(공급기업) 환경신기술 인증 및 환경기술 검증기업 (신청일 기준 인증 유효기간 내)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및 환경부고시 「환경신기술 인증 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 해당기술에 한함	1	증빙제출
6	(공급기업) 환경성적표지 인증, 환경표지인증, 녹색인증 기업 (신청일 기준 인증 유효기간 내)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및 제18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 해당기술에 한함	1	증빙제출
7	(공급기업) [정부 기관, 각 금융기관 등] 기술성진단 결과 우수 등급 이상 기업 * 해당기술에 한함	1	증빙제출
8	(공통) 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에 선정·등록된 고용창출 우수기업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1	증빙제출
9	(공통) 환경경영 우수기업(평가등급 A~AAA) * 녹색경영기업 금융지원시스템(enVinance)	1	증빙제출
10	(공통)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지정서 지정기간 내)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6	1	증빙제출
11	(공통) 사업 사전 신청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한 수요기관, 공급기업 (개별 적용)	0.5	증빙제출

※ 총 가점은 서면평가 6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하여 최대 8점 적용하며, 동일항목 중복 불가

라. 감점 기준

항 목	감점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동 프로그램(사업)의 지원과제로 선정된 이후 협약 중지(협약 정식 체결 전 포함) 이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	5점

붙임 2

비목별 계상 및 산정기준

구분		사용 용도	계상 및 산정기준
비목	세목		
인건비	내부 인건비	1. 공급기업 소속 인력이 해당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1. 소속 기업의 급여기준에 따른 사업 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현물로 계상 * 소속 기업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 × 참여율 × 실제 참여기간(월) * 수행책임자의 참여율은 30% 이상 * 참여율은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당해연도 사업기간 중 다른 사업의 종료 등을 고려하여 기간별로 참여율 차등계상 가능 ※ 실지급액은 4대 보험과 퇴직급여 총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 포함
유형 자산	자산 취득비	1. 공작물, 대규모 기계, 기구 등의 구입비	1. 실소요 경비를 계상 2. 구입한 장비의 설치 시 소요되는 금액을 내역에 포함
건설비	시설비	1. 공작물, 대규모 기계장치, 기구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등	1. 실소요 경비를 계상 2. 자재 및 운송·설치에 소요되는 세부 내역 포함 - 공급기업의 노무비 및 제경비 제외 ※ 설비공급기업 내부 보유 및 설비공급기업과 설비수요기관 간 장비, 시설, 공간에 대한 사용료 및 임차료는 산정 불가
운영비	일반 용역비	1. 사업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1. 지원기업이 해당 컨설팅 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산정 (최대 30백만원까지 가능) 2. 정산관련 검증용역비 (최대 2백만원까지 가능)

구분		사용 용도	계상 및 산정기준
비목	세목		
	일반수 용비	1. 시험분석 수수료	1. 실소요 경비를 계상 - 공인인증시험기관 및 전문기관 분석 수수료 ※ 분석 시약 및 키트, 분석기기 산정 불가

※ 사업과 직접 관련 비용만 산정 가능하며, 상기 제시된 사용 용도 외의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 불가

※ 미지원 항목 : 부가가치세, 기존시설 철거비, 조달수수료, 보험료 등

2024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사업 신청서

과제명					
분야		<input type="checkbox"/> 청정대기 <input type="checkbox"/> 기후테크 <input type="checkbox"/> 스마트물 <input type="checkbox"/> 자원순환 <input type="checkbox"/> 환경AI·ICT <input type="checkbox"/> 바이오가스			
수행기관	주관기관	업 체 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업 종	
		수행책임자명		부서/직책	
		이 메 일		사무실 ☎	
			휴대전화 ☎		
	설비공급기업(ㄴ)	업 체 명		대표자명	
		기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input type="checkbox"/> 중견기업		
		주 소			
		담당자명		사무실 ☎	
			휴대전화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설비수요기관	업 체 명		대표자명		
	기업구분	<input type="checkbox"/> 대기업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input type="checkbox"/> 중견기업 <input type="checkbox"/> 지자체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기타			
	주 소				
	설치장소				
	담당자명		사무실 ☎		
		휴대전화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컨설팅기관	업 체 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전문분야		
	담당자명		부서/직책		
	이 메 일		사무실 ☎		
			휴대전화 ☎		
사업현황	협약기간 ~ (개월)	예상효과		
	총사업비(비율)	정부지원금(비율)	민간부담금(비율)		
	천원 (100%)	천원 (%)	천원 (%)		
위와 같이 「2024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을 신청합니다.					
주관기관(설비공급기업) 대표자 (인) 설비공급기업 대표자 (인) 설비수요기업 대표자 (인) ※ 복수의 설비공급기업인 경우, 기업별 대표자 날인 필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 : 2024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사업계획서 1부.					

2024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사업계획서

주관기관 (설비공급기업)	
설비공급기업	
설비수요기관	
컨설팅기관	

• •

사업 계획 요약

과 제 명			
설 비 명		설 비	(주관)
		공급기업	(공급)
지 원 분 야		설 비	
		수요기관	
설 치 장 소			

구 분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협약기간
금 액 (천원)			~
비 율 (%)			

1. 사업 추진 배경

-
-

2. 사업 목표

구 분	사업 전 (A)	사업 후 (B)	개선률 $(\{A-B\}/A, \%)$	예상효과
(예시)				
대기	ton/년	ton/년		
수질	ton/년	ton/년		
폐기물	ton/년	ton/년		
소음	ton/년	ton/년		
악취	ton/년	ton/년		
...				

* 제2장(사업추진내용-2.사업의목표) 및 제3장(예상효과)와 동일한 표로 작성(필수)

3. 세부 사업 내용

-

4. 세부 추진 일정(안)

-

5. 예상 감축효과 및 기타 기대효과

-

(사업계획 요약서는 1page 이내로 작성)

제1장

수행기관 일반현황

1. 주관기관(설비공급기업)

1.1. 기본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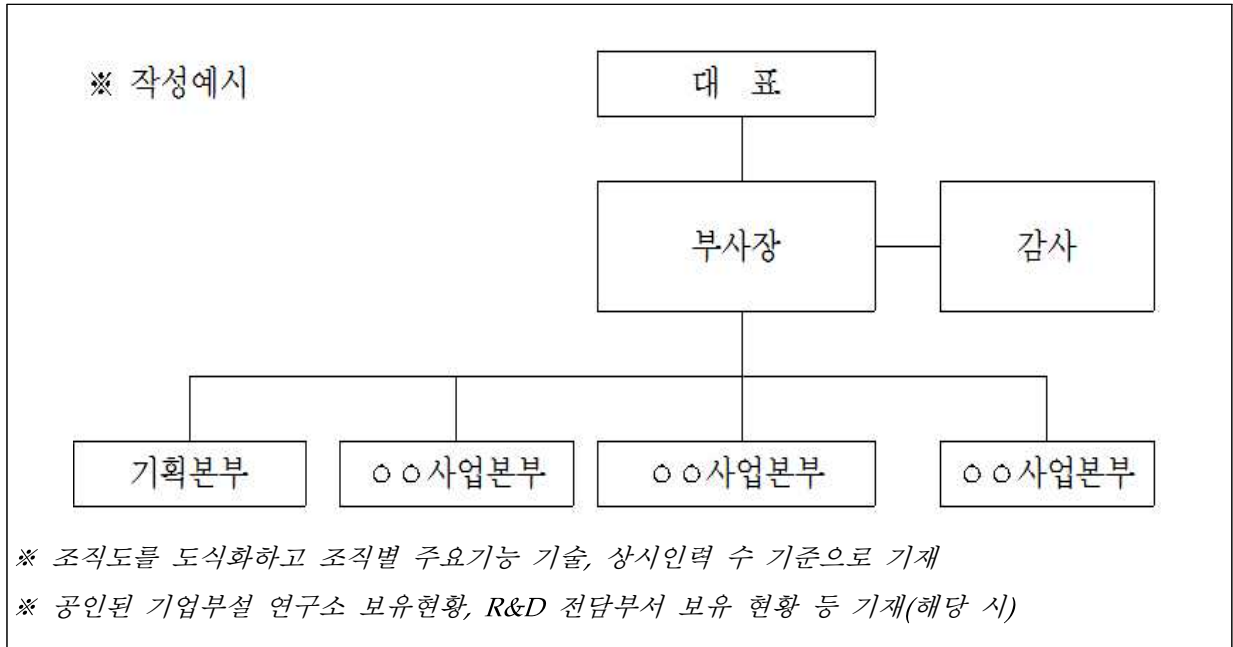
업 체 명		설립일	
설립목적			
기관연혁			
인력현황	대표자 :	직원 수 :	명 ※ 상시인력 수 기준으로 기재
주 생산품			

1.2. 최근 2개년 재무현황

(단위:천원)

구분	00년	00년
유동자산		
고정자산		
자산총계		
유동부채		
고정부채		
부채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자본총계		
매출액		
환경산업부분 매출액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이자비용		

1.3. 기구현황



2. 설비수요기관

2.1. 기본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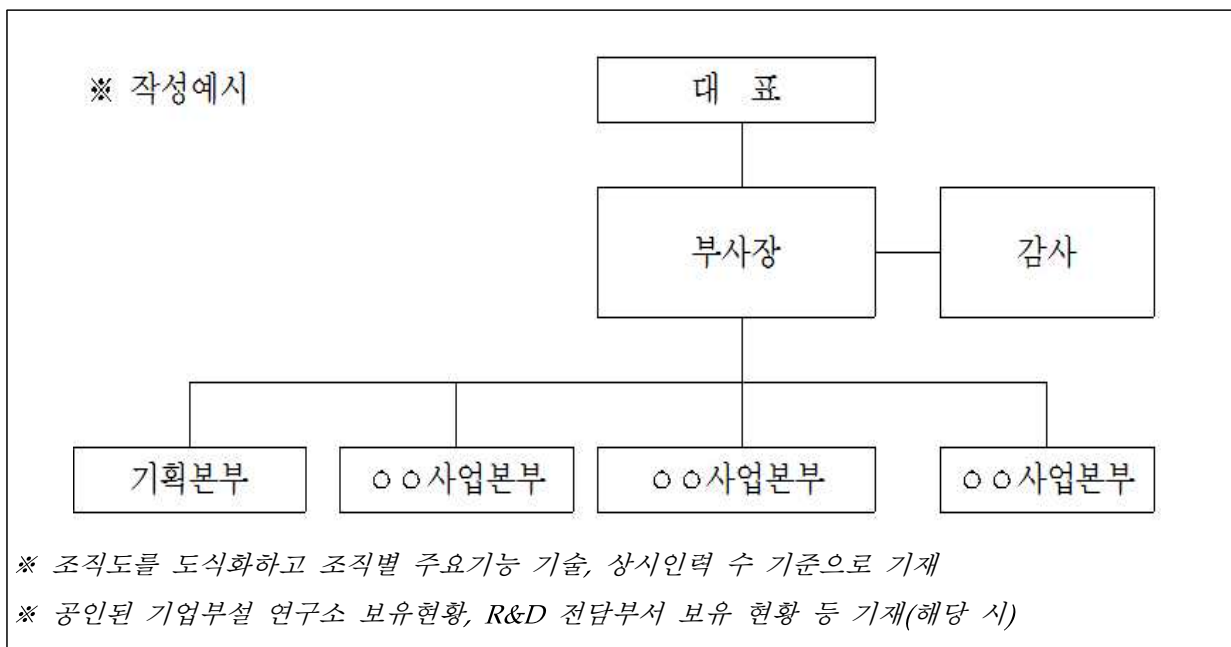
업 체 명			설립일	
설립목적				
기관연혁				
인력현황	대표자 :	직원 수 :	명	※ 상시인력 수 기준으로 기재
주 생산품				

2.2. 최근 2개년 재무현황

(단위:천원)

구분	00년	00년
유동자산		
고정자산		
자산총계		
유동부채		
고정부채		
부채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자본총계		
매출액		
환경산업부분 매출액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이자비용		

2.3. 기구현황



제2장 사업 추진 내용

1. 사업 추진 배경

○

○

* 본 사업 참여 배경 및 목적, 해당 지원사업자(설비공급기업, 설비수요기관)가 사업자로 참여하게 된 배경 등 기술

2. 사업의 목표

○

○

구분	사업 전 (A)	사업 후 (B)	개선률 $(\{A-B\}/A, \%)$	예상효과
(예시)				
대기	ton/년	ton/년		
수질	ton/년	ton/년		
폐기물	ton/년	ton/년		
소음	ton/년	ton/년		
약취	ton/년	ton/년		
...				

* 제2장(사업추진내용-2.사업의목표) 및 제3장(예상효과)와 동일한 표로 작성(필수)

3. 사업내용

3.1. 신청 기술(설비) 개요

○ 기술(설비)명 :

○ 기술(설비) 개요

-

-

* 신청 기술(설비)에 대하여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

* 설비 용량 또는 규격 등 기재

* 모든 전문용어에 대하여 full name으로 표기

3.2. 신청 기술(설비) 관련 동향

○

* 신청 기술(설비) 관련 국내의 시장동향 및 사업규모 등 관련내용 기술

3.3. 신청 기술(설비) 필요성

○ 기술(설비)의 차별성 및 우수성

-

-

* 신청 기술(설비)의 기술성·산업적 중요성, 타 기술과의 차별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기술(설비)의 정부지원 사업과의 연관성

-

-

* 신청 기술(설비)가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부분을 해당 기술(설비)의 기술적 특성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기술(설비)의 사업화 계획 등

-

-

* 신청 기술(설비)의 산업계 파급효과 및 시장 확보 등 사업화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신청 기술(설비)의 용량, 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4. 신청 기술(설비) 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노력 (해당되는 항목 기재)

4.1. 정부출연 개발과제 수행실적 ※ 최근 3개년 이내 실적만 기재

No	사업명 (시행부처/기관)	과제명	총 개발기간 (시작~종료일)	총사업비 (백만원)
①			00.00~00.00	
②				
③				

* 최근 3개년 이내에 추진한, 동 지원사업 신청 기술(설비) 관련 정부출연 개발과제 내용만 기재

* 정부출연 개발과제 협약서, 최종 평가결과 통보 공문, 기술료 납부 서류 등 증빙제출

[과제 세부 추진내용]

No.	과제명	추진내용
①		
②		
③		

* 상기 "1.수행실적"에 기재한 각 과제별 세부 추진내용 및 추진성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4.2. 지식재산권

No.	등록번호	명칭	권리자	등록일

* 동 지원사업 신청 기술(설비) 관련 지식재산권만 기재, 관련 증빙자료(특허증 등) 필요

4.3. 성능시험검사

No.	성능시험검사 명칭(내용)	발급기관	발급일(예정)	비고

* 동 지원사업 신청 기술(설비) 관련 성능시험검사 결과만 기재, 관련 증빙자료(시험성적서 등) 필요

4.4. 최근 3년 이내 해당기술 매출 실적

-
-

No.	연도	설비명	거래처	매출액

5. 설비공급기업-설비수요기관 협력체계

5.1. 사업비 부담

(단위 : 원, %)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설비공급기업	설비수요기관
		(현금) (현물)	(현금) (현물)
100%	%	%	%

* 제2장(사업추진내용-5.1.사업비 부담) 및 제4장(사업비사용계획등-1.총괄표)와 동일한 표로 작성(필수)

5.2. 협력체계

-
- * 신청 기술(설비) 설치와 관련하여 설비공급기업과 설비수요기관 간 협의 내용, 기술(설비) 설치 이후 설비공급기업의 하자보수이행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5.3. 컨설팅기관 협력체계

-

6. 세부추진일정

No.	사업추진내용	진도율(개월)					
		1	2	3	4	5	6
1							
2							
3							
4							
5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추진내용별 일정을 Bar Chart로 표기 (필요 시 행 추가)

7. 최근 5년간 보조사업 지원이력

보조사업명	사업연도	사업내용	사업규모	보조금액	주관기관	반납 및 환수완료 여부

8. 부정수급 방지대책

9. 사업수행참여자 및 업무분장

No	성명	직위	수행업무	참여율(%)
1				
2				
...				

* 제4장(사업비 사용계획 등)-2.세부사용계획 인건비 산정 인원과 동일하게 작성(필수)

제3장

예상 효과

1. 기술 명(과제명):

2. 환경개선 예상 효과

구분	사업 전 (A)	사업 후 (B)	개선률 $\{(A-B)/A, \%$	예상효과
(예시)				
대기	ton/년	ton/년		
수질	ton/년	ton/년		
폐기물	ton/년	ton/년		
소음	ton/년	ton/년		
약취	ton/년	ton/년		
...				

* 제2장(사업추진내용-2.사업의목표) 및 제3장(예상효과)와 동일한 표로 작성(필수)

* 예상효과는 정량적으로 산정하여 작성하며, 사업전 배출량 및 소비량등 산정에 적용한 증빙자료(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첨부

3. 산출근거

※ 효과 산정 시, 신청 기술(설비)를 설비수요기관에 설치하였을 때의 효과만 산정(전 국가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가정하는 등 설비수요기관 범위를 넘어서는 효과 산정 불가)

예시) 신청설비 : A 집진기

- 사업 전 : 설비수요기관에서 A 집진기 도입 전 기존 사용하던 집진기 사용 따른 사용량 및 배출량
- 사업 후 : 설비수요기관에서 A 집진기 도입 이후 사용량 및 배출량 (예상치)
- 예상 감축량 : 사업 전 배출량 - 사업 후 배출량

4. 기타 기대효과

개요	
세부내용	

제4장 사업비 사용계획 등

1. 총괄표

(단위 : 원, %)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설비공급기업	설비수요기관
		(현금)	(현금)
		(현물)	(현물)
100%	%	%	

* 제2장(사업추진내용-5.1.사업비 부담) 및 제4장(사업비사용계획등-1.총괄표)와 동일한 표로 작성(필수)

※ 설비공급기업, 설비수요기관이 복수인 경우, 표의 칸을 추가하여 각각 기재

2. 세부 사용계획

(단위 : 원)

비목	세목	세부내역	산출근거	금액
인건비	인건비	소계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소계		
건설비	시설비	소계		
운영비	일반운영비	소계		
		일반수용비		
합 계				

*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세부 산출내역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 필요 (외주제작 견적서 등)

* 자산취득비·시설비는 건당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을 포함하여 제출

*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개별 집행건별로 증빙서류를 갖추어 세부내역 입증 필요

제5장 사후관리 계획

<p>유지·보수 계획 및 인력운용 계획</p>	
<p>사후관리 대응계획</p>	
<p>모니터링 방 법</p>	
<p>성과관리 방 법</p>	
<p>기 타</p>	

제6장

별첨서류

구분	순번	첨부서류			수량 (부)	체크사항		비고
						제출	비제출	
공단양식 작성서류	1	수행기관	[별지2] 사업 신청서		1			※ 별첨의 엑셀파일 작성 후 함께 제출
	2	수행기관	사업계획서		1			※ 별첨의 엑셀파일 작성 후 함께 제출
	3	공통	[별첨1] 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원본	1			
	4	공통	[별첨2] 중복지원 금지 협약서	원본	1			
	5	공통	[별첨3] 신청기업 자기진단서	원본	1			
	6	공통	[별첨4] 안전보건 서약서 및 안전보건계획서	원본	1			※ 안전보건계획서 작성 시 신청기업 자체 양식 사용 가능
구비서류	7	공통	사업자등록증	사본	1			
	8	공통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			
	9	공통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			※ 개인사업자일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원본 제출
	10	공통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원본	1			
	11	공통	최근 2개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사본	1			
	12	공통	가점 현황 증빙자료	사본	1			※ 해당시 제출
	13	공급기업	고용 증빙 자료(4대보험 중 가입자 확인 가능 자료)	원본	1			※ 사업비에 인건비 계상시
	14	공급기업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사본	1			
	15	공급기업	신청 기술 관련 증빙자료	사본				※ 특허증, 시험성적서, 성능확인서 등
	16	공급기업	설비의 사양과악 자료	-	1			※ 카탈로그 등
	17	공급기업	설비의 주요구성 및 설계도, 조감도 등	-	1			
	18	수요기관	기존 시설의 주요 구성도	-	1			
	19	수행기관	예상효과 산출근거 데이터 증빙자료	-	1			
	20	수행기관	사업비 사용계획 산출내역에 대한 견적서 등 근거자료	-	1			※ 자산취득비·시설비는 건당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 포함 ※ 일반용역비는 산출내역서 및 과업지시서 포함

◆ 사업계획서 작성 및 별첨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1. 사업계획서에 페이지 기재 필요

※ 사업계획서 표지를 제외한 '사업계획 요약'부터 1페이지 시작

2. 모든 사본 제출서류에는 각 제출서류 해당 기업의 '원본대조필' 날인 필요

3. 서류에 날인하는 인장은 (법인, 개인)인감증명서에 있는 인장 또는 직인만 유효

※ 각종 제출서류에 날인하는 인장을 직인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 개인)인감증명서 상 인장과 직인을 한 면에 동시 날인한 사용인감계 제출 필요

4. 제출서류 중 유효기간이 명시된 제출서류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잔여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만 인정

【별첨 1】 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사업명	0000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기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설비공급기업	<input type="checkbox"/> 설비수요기관	
기업명		담당자 (수행책임자)	
<p>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협력관계를 촉진하고 실증 지원 등을 위하여 환경부의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계여부) 수요기관과 공급기업은 계열사 및 출자지분 관계가 없음을 확인한다. 2. (신청과제의 제출)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사업계획서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전담기관에 제출하는데 동의한다. 3. (민간부담금 분담) 수행기관은 신청과제가 선정될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총사업비의 00% 이상을 수요기관 민간부담금으로 납입하기로 한다. 민간부담금은 선정통보일로부터 0일 이내에 사업비 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4. (협약체결) 수행기관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협약서”를 상호 협약한 후 사업을 추진한다. 5. (과제 관리·점검) 수행기관은 환경설비 설치 및 실증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소속직원 및 관계 전문가의 참여 등을 통해 동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점검한다. 6. (사후관리) 동 사업 추진에 따른 지원성과에 대해 주관기관이 전담기관 요청에 성실히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7. (해석) 본 동의내용에 관하여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담기관과 협의하여 본 사업의 목적에 맞게 해석한다. 8. (기타) 본 사업의 구체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관리지침」에 따른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 0000년 월 일 A기업 대표 000 : (인) </div>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font-weight: bold;">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p>			

【별첨 2】 중복지원 금지 협약서

중복지원 금지 협약서			
사업명	0000년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기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설비공급기업	<input type="checkbox"/> 설비수요기관	
기업명		담당자 (수행책임자)	
<p style="text-align: center;">「0000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에 참여한 당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타 정부지원사업과 중복지원하지 않겠으며, 중복지원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정부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동 사업의 진행상의 정책 및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합니다.</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0000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A기업 대표 000 : (인) </div>			
<p style="font-size: 1.2em; font-weight: bold;">한 국 환 경 공 단 이 사 장 귀하</p>			

【별첨 3】 수행기관 자기진단서

<h2 style="margin: 0;">자기진단서</h2>		
사 업 명	0000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기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설비공급기업 <input type="checkbox"/> 설비수요기관	
기 업 명	담당자 (수행책임자)	

진단 사항 (해당/비해당 여부를 '○' 표기)

※ 향후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허위사실임이 밝혀질 경우, 정부지원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조치

진 단 내 용	해당여부		비고
	여	부	
•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			
• 휴·폐업 중인 경우			
• 본 지침 제29조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 보조금법을 위반하여 수행 배제 기간 중인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중인 경우			
• 최근 2년 연속 자본잠식 50% 이상인 경우			
•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환경관련 법률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 받은 경우			
• 사업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사업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1회 이상 고발 또는 3회 이상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 사업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인 경우			
• 사업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속한 사업장인 경우			
•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속한 사업장 및 제13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인 경우			
• 제출한 사업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 타 정부지원 사업에 선정된 경우 (해당 과제에 한함)			
• 사업화(매출발생)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 목적인 경우			

20 년 월 일

A기업 대표 000 : (인)

한 국 환 경 공 단 이 사 장 귀하

【별첨 4】 안전보건서약서

안 전 보 건 서 약 서

○ 계약전명 : 0000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 계약기간 :

○ 업 체 명 :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관련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작업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내 뛰어다니는 등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단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2022.8.10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